등록기준신고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 갈라잡이입니다.

기유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날부터 매 3년마다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이용방법

신청방법	우편, 방문			
접수·처리	총 7일		시 · 도 접수 (1일)	시 · 도 처리 (6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 1.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서 (1부) 2.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 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적 및 주소 등의 인적 사항이 적한 서류 (1부) 3.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이 규칙제8조의2에 1항단서에 따른 서류 (1부) 4.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 16조제 1호의2에 따른 확인서 (1부) 5.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 수첩 사본 (1부) 6.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 수첩 사본 (1부) 7. 사무실평면도 나. 임대차계약서(임대차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사본 (1부) 다.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건축법」제15조에 따른 신고대상가설건축물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7.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 사본 (1부)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 하여야 하는 서류) 1. 「출입국관리법」제 88조의 2페 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법인등기부동본 (1부) 3.건물등기부동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부) 4. 「건축법」제 15조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서 (1부) 			
구비서류				
관련 법ㆍ제도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제2항)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19조)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정(제4조제4항)			